

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31 |
|----------|------|

2020년 5월 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1년 4월 2일
- 다. 회부일 : 2021년 4월 6일
- 라. 상정일 :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1년 4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병한 재무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감면 결정 통지가 삭제된 사항 및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시세 감면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사항을 반영함(안 제11조).
- 2)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12조).

- 3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‘감면여부 결정’ 및 ‘통지’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19조).
- 4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직접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반영함(안 제 24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(비용발생 요인 없음).
- 다. 입법예고: (2021. 1. 28.~2. 17.)결과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지방세 감면 관련 용어 명확화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재산세 감면 관련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 가.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는 주민세를 균등분,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세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,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면서,

< 지방세법 개정(주민세 과세체계 정비) 내용 >

| 당초   | 개정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|---------|--|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-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의 세세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균 등 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사업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 산 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 업 원 분</td> </tr> </table> | 균 등 분 | 개 인   | 개인사업자 | 법 인 | 재 산 분 |  | 종 업 원 분 |  | - 주민세 :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단순화(3개 세세목)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인 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업 소 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 업 원 분</td> </tr> </table> | 개 인 분 | 사 업 소 분 | 종 업 원 분 |
| 균 등 분  |       | 개 인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|       | 개인사업자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| 법 인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재 산 분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종 업 원 분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개 인 분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사 업 소 분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종 업 원 분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|         |  |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-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세 체계를 개편한 「지방세법」 개정\*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\* (시행 2021. 1. 1., 법률 제17769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)

**<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주요 내용 >**

| 당 초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|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구분          | 납세의무자 | 세율체계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| 납세의무자        | 세율체계 |
| 균등분<br>(8월) | 개인    | 1만원 內                 | 개인분(8월) | <좌 동>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 | 5만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사업소분<br>(8월) | 사업자  |
|             | 법인    | 5~50만원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
| 재산분<br>(7월) | 사업자   | 연면적 330㎡ 초과<br>250원/㎡ | 종업원분    | <좌 동>        |      |
| 종업원분        | 사업자   | 월급여액×0.5%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

「지방세법」 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9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◇주요내용

가.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(제74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1조 및 제83조).

- 1) 균등분,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,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,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.

| 개 정 전  | 개 정 후  |
|--|--|
| 제7장 주민세  | 제7장 (종전과 같음)   |
| 제3절 재산분  | 제3절 사업소분   |
| 제80조(과세표준) <u>재산분</u> 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<u>사업소 연면적으로</u> 한다.   | 제80조(과세표준) <u>사업소분</u> -----<br>----- <u>사업소 및 그 연면적</u> -----.  |
| 제81조(세율) ① <u>재산분</u> 의 표준세율은 <u>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</u> 한다. | 제81조(세율) ① <u>사업소분</u> 의 세율은 다음 <u>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<br>1. 기본세율<br>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<br>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<br>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: 5만원<br>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 |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.

③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.

0만원

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
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-----  
----- 제1항제1호와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-----.

<삭 제>

※ 현행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(구) 주민세 법인 균등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항 제2호는 (구) 주민세 재산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본 안은 주민세 세세목 중 ‘재산분’과 ‘균등분(개인사업자, 법인)’을 ‘사업소분’으로 통합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‘재산분’을 ‘사업소분’으로 개정하되,
- 이로 인하여 종전의 ‘재산분’에 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서(「지방세법」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)를 달아 종전의 범위에서 감면을 유지하려는 것임.

##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①<br/>(생략)</p> <p>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이 조에서 “사회적협동조합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<u>재산분·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| <p>제11조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①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).</u> <u>종업원분</u> --.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|

### 나.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는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,
  - 환지계획 등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(85㎡ 이하)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,
  - 주택공급자로서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요건(재개발 사업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)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

<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인용조문 개정[시행 2020. 1. 15.] 비교표>

| 개 정 전   | 개 정 후   |
|---|---|
| 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<br>③ (생략, 별첨)<br>1. <u>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</u><br>2. (이하 생략) | 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<br>⑤ (생략, 별첨) <신설 2020.1.15><br>1. <u>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br>2. (이하 생략) |

※ 지방세특례제한법 [시행 2020. 1. 15.] [법률 제16865호, 2020. 1. 15., 일부개정] 제74조 개정 전문 전·후 비교표 별첨

- 먼저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(제74조) 개정(시행 2020. 1. 15.) [법률 제16865호, 2020. 1. 15., 일부개정] 내용을 살펴보면,
-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,
-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되,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하여 개정하였음.

| 구 분 | 감 면 내 용            | 개 정 전         | 개 정 후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시행자 | 체비지 또는 보류지         | 취 100% (§74①) | -<br>(조문정비, §74⑤2) |
|     |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| 취 75% (§74③1) | 취 50% (§74⑤1)      |
|     |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| 취 75% (§74③2) | 취 50% (§74⑤2)      |

- 한편, 지방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,

※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위임 운영하고 있음.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2011.1.1. 시행)의 위임 없이 제정 이전부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운영해 온,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\* 관련 취득세 감면 사항을 지속 운영하려는 것으로,

※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 부칙에 관련 적용례나 경과규정 미규정

- 해당 사업이 현재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조합이 유지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본 조례로 취득세 감면 사항을 지속 유지하려는 것임.

\* 주택재개발사업 48개, 주거환경개선사업 28개 조합 유지중

- 다만, 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74조)이 개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,

- 재무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**다.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문구 등 삭제 반영(안 제19조)**

- 안 제19조는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183조제2항, 2021.1.1.시행)에서 지방세 ‘감면여부 결정’ 및 ‘통지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183조제1항)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,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,
-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-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의 적용이,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‘처분’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운영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감면여부에 대하여 ‘조사결정하고’를 ‘확인하고’로, 신청인에게 ‘통지 하여야 한다’를 ‘안내하여야 한다’로 개정하여,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임.

※ 감면신청 확인, 안내 후 감면요건 위반 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(결정·부과처분)

**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**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<u>조사·결정</u> 하고 그 | ② -----<br>----- <u>확인</u> -----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br>③·④ (생략) | -----<br>----- 안<br>내-----.<br>③·④ (현행과 같음) |

**< 지방세특례제한법 >**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71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| 개정 전  | 개정 후  |
|---|---|
| 제183조(감면신청 등)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<br><br>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 | 제183조(감면신청 등) ① (종전과 같음)<br><br>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(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9> |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결정 통지<br>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·통지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결정 통지 문구 삭제<br>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'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' 및 '그 결과 통지' 삭제 |

**라. '직접사용'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4조)**

- 안 제24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요건 중 '직접 사용'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'건축물'뿐만 아니라 '주택'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이를 '직접 사용'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,
-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**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**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토지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</u> 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| 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건축물 및 주택</u> -----<br>--. |

**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**

[시행 2021. 1. 1] [대통령령 제31344호, 2020. 12. 31, 일부개정]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 |
|--|--|
| 제123조(직접 사용의 범위)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</u> 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 | 제123조(직접 사용의 범위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건축물 및 주택</u> -----. |

※ 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

| 법      | 제목                  | 법      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§31④,⑥ |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    | §31의4② |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|
| §31의3  |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| §36    |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|

- 한편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제123조)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,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 제3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,
  - 임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,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있는바,

###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요약

- ① 임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(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분 취득세 포함) 취득세 감면
-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
- ④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
-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·재산세 감면

- 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건축 중인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마. 기타(부칙)

-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(제1조), 적용례(제2조)를 규정하고 있음.
- 부칙 제2조는 본 개정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는 것임.

#### 일 부 개 정 조 례 안

#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3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감면 결정 통지가 삭제된 사항 및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시세 감면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 과세체계사항을 반영함(안 제11조).
- 나.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12조).
- 다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지방세 ‘감면여부 결정’ 및 ‘통지’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19조).
- 라.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직접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반영함(안 제24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세법」
  - 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. 28.~2. 17.)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재산분·종업원분”을 “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)·종업원분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법 제74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74조제5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조사·결정”을 “확인”으로, “통지”를 “안내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건축물”을 “건축물 및 주택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p> 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(상속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가 <u>법 제74조제3항제1호</u>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)</p> |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법 제74조제5항제1호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| <p>2. (생략)<br/>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생략)<br/><br/>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<u>조사·결정</u>하고 그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</p>   | <p>2. (현행과 같음)<br/>제19조(감면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/><br/>② ----- <u>확</u><br/>----- <u>인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<u>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토지에 대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<u>건축물</u>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p> | <p><u>안내</u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직접 사용의 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건축물 및 주택</u>-----</p> <p>-----.</p> |

#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 4. 작성자

재무국 세제과 장원중(02-2133-3357)